

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(요양)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요양시설 운영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7,267,175천원	(국비)	(사비)7,267,175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영란 2133-7400	송미정 2133-7419	이원조 2133-7436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영란 2133-7400	송미정 2133-7419	신명근 2133-7422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영란 2133-7400	송미정 2133-7419	정재훈 2133-7420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6,250,733	(x-) 7,267,175	(x-) 1,016,442	(x-) 16
사무관리비	(x-) 50,000	(x-) 100,650	(x-) 50,650	(x-) 101
민간위탁금	(x-) 2,395,685	(x-) 2,470,502	(x-) 74,817	(x-) 3
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 3,805,048	(x-) 4,696,023	(x-) 890,975	(x-) 23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좋은돌봄인증(요양) 매뉴얼 개발 및 제작 1회*30,000,000원	= 30,000천원
	○ 인증관련 자문회의 7명*6회*100,000원	= 4,200천원
	○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9명*4회*150,000원	= 5,400천원
	○ 장기요양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,000,000원	= 10,000천원
	○ 요양보호사 교육관리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39,500,000원	= 39,500천원
	○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비용 11,550,000원	= 11,550천원
민간위탁금	○ 시립노인요양시설(7개소)	= 2,470,502천원
	-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32명*62,770원*365일	= 733,154천원
	- 비급여액(식비)지원 550명*1,000원*365일*3식	= 602,250천원
	-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550명*14,000원	= 7,700천원
	- 추가 인건비 182,156,000원	= 182,156천원
	- 종사자처우개선비 634,140,000원	= 634,140천원
	- 복지포인트 880명*1회*100,000원	= 88,000천원
	- 갈곳없는 어르신 보호	= 76,947천원
	▷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3명*62,770원*365일	= 68,734천원
	▷ 비급여(식비)지원 3명*2,500원*365일*3식	= 8,213천원
	- 위문금 지원 550명*10,000원*4회	= 22,000천원
	-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(중계,엘림) 50명*62,770원*30일	= 94,155천원
	- 시설 종사자 워크숍	= 30,000천원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
	▷ 시설종사자 교육비 1,000명*15,000원	= 15,000천원
	▷ 시설종사자 연수비 1,000명*15,000원	= 15,000천원
사회복지사업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립 법인 노인요양시설(73개소) = 3,097,523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= 687,332천원 30명*62,770원*365일 - 비급여액(식비) 지원 = 1,543,950천원 1,410명*1,000원*365일*3식 -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 = 12,040천원 860명*14,000원 - 종사자처우개선비 = 640,260천원 640,260,000원 - 갈 곳 없는 어르신 보호 = 179,541천원 ▷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= 160,378천원 7명*62,770원*365일 ▷ 비급여(식비)지원 = 19,163천원 7명*2,500원*365일*3식 - 위문금 지원 = 34,400천원 860명*10,000원*4회 ○ 노인요양시설 인종 = 1,548,5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종보조금 지원 = 1,160,000천원 1,160,000,000원 - 대체인력지원 = 388,500천원 388,500,000원 ○ 소규모 요양시설 영양서비스 지원강화 = 50,000천원 50,000,000원 	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저소득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

사업근거

- 노인복지법 제 47조(비용의 보조) 및 동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

-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-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(어르신복지과-834,'19.1.14.)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노인요양시설 80개소, 서울형좋은돌봄인증 시설 58개소
 - 총 518개소 중 시립,구립,비영리법인 운영시설 기초수급자 지원
 - 서울형좋은돌봄 인증시설 58개소 인증보조금 및 대체인력 지원
- 지원내용
 - 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이전 입소 등급외자 지원
 - 등급외자수가 지원비 : 62,770원/일(3등급 수가. '19년 51,820원 대비 평균 상승치 6.07% 상승 반영)
 -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비급여 항목(식비 등) 지원
 -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비급여 항목(식비 등) : 1인 1식 1,000원
 - 위문금 : 분기별 1회 10,000원(설날, 어버이날, 추석, 연말)
 - 춘계부식비 : 1인 연간 7,000원
 - 김장비 : 1인 연간 7,000원
 - 시립시설 추가 지원 종사자 인건비 : 3개소, 5명
 - 갈 곳 없는 어르신 보호 : 등급외자 요양수가 및 비급여(식비)
 - 종사자 처우 개선비
 - 기초수급자우선입소시설(16개소) 및 시립노인요양시설(5개소) 종사자
 - 종사자 워크샵
 - 시립노인요양시설 복지포인트 : 1인 연간 100,000원
 - 좋은돌봄인증시설 58개소 대상 인증보조금(인센티브) 및 대체인력 지원
 -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(5,000~36,000천원)
 - 요양시설 종사자 연가 및 교육시 대체인력 지원(종사자 1인당 3일)
 - 소규모 요양시설(50인이하) 영양서비스 지원 강화
 - 영양사 미배치된 소규모 요양시설 영양서비스(식단, 교육 등) 지원

□ 추진경위
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예산조치 계획(2008.7.4.)
- 갈 곳 없는 등급외 판정 기초수급자 어르신 보호(2011.8.11.)
- 노인요양원 서울형 인증제 도입(2015.7)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울형 인증제 도입(2016.7)

□ 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7,267,175	
기본계획 수립	2020.01~2020.02	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20.02~2020.12	7,267,175	분기별 교부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요양시설 75개소 운영비 지원
2018년도	○ 요양시설 77개소 운영비 지원
2019년도	○ 요양시설 75개소 운영비 지원 ○ 서울형 인증시설 지원강화책 마련(지원금 증액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 지원
- 무의탁 저소득 어르신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-) 6,050,000	(x-)	(x-)	(x-) 6,050,000	(x-) 5,324,000	(x-)	(x-) 726,000
2017	(x-) 6,105,000	(x-)	(x-)	(x-) 6,105,000	(x-) 5,372,000	(x-)	(x-) 733,000

2018	(x-) 6,730,534	(x-)	(x-)	(x-) 6,730,534	(x-) 5,225,534	(x-)	(x-) 1,505,000
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